

본격적인 영농철 ! 농약 바르게 알고 사용합시다 !

- ▶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 ▶ 재배작목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 ▶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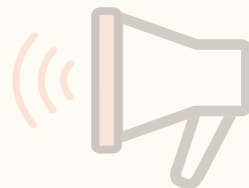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확인은 여기에서 !

등록농약확인 :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잔류허용기준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농약안전사용 관련 민원상담

농촌진흥청 : 1544-8572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1544-8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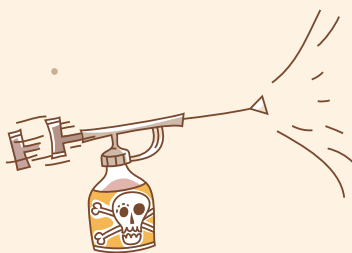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0년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2년 차!

PLS(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



- ▶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 ▶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 일률기준 0.01ppm 이하 적합

*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시 해당 농산물 폐기나 출하연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프로사이미돈 주요 부적합 사례 지속 발생!

- 주로, 겨울철 · 봄철 시설하우스에서의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발생 -

▶ 프로사이미돈 부적합 검출, 왜 발생할까?

→ 고농도 사용 : 프리사이미돈 수화제(스미렉스)는 유효약량이 50%로 농도가 높아 중복사용 또는 희석배수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농도로 조제됨.

→ 관행적 사용 : 미등록 농작물(참나물, 돌나물, 근대, 취나물, 들깻잎 등)에 잣빛곰팡이병, 무름병 등 방제를 위해 관행적 사용

→ 토 양 잔 류 : 반복사용에 따른 토양(특히, 시설재배지)에 높은 농도로 남아 후작물에서 검출

< 프로사이미돈 사용 가능 작물 >

고추, 딸기,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수박, 부추

< 프로사이미돈 농약상표명 >

너도사, 다이렉스, 사이미돈, 스미렉스, 영일프로파, 이미엠젯사이트, 인바이오프로파, 임페리얼, 초그만, 팡이큐, 팡이탄, 팡자비, 팡청소, 프로팡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안전농약사용의 시작!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란?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
(단, 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

- *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 2019. 7. 1.부터 시행
- * 판매·구매 정보의 전산 기록 : 2020. 1. 1.부터 시행

▶ 판매정보 기록대상 및 구매자 정보제공 사항

→ 판매정보 기록대상

: 구매자 이름, 주소, 연락처, 구매농약 품목명(상표명), 등록규격(성분포함비중), 판매일자, 판매량, 포장단위, 구매자의 사용대상 농작물명

→ 구매자 정보제공

: 구매자는 판매업자에게 이름·주소·연락처·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제공하여야 함.

- * 최초 방문 구매자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3년간 유효)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Q1. 모든 농약이 기록대상이 되는 건가요?

A 법률에서 정한 소포장 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농약이 기록대상**이 됩니다.

Q2. 구매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농약을 팔 수 없나요?

A 농약관리법 제23조 2에 따라 판매업자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판매기록이 불가하고 관련 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업자	판매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Q3. 예전부터 판매업체에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제공했었는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A 단골고객이라 할지라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판매기록·제공(제3자 제공)을 위해서 판매자는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Q4.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매번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농약 구매자가 **최초 1회 작성**(타 업체 방문 시 재작성 필요)할 경우 **3년간 그 효력**이 있습니다.

Q5. 농약 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농업인이 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모든 판매업체에서 구매한 본인의 구매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재배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구매할 수 없나요?

A. 미등록 농약의 사용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업자로부터 대체 농약을 추천받으셔야 합니다. 등록 농약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농진청 또는 농약 제조회사에 농약 등록을 요청하십시오.

* 처벌기준 : (농 업 인) 미등록 농약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업자) 미등록 농약 추천 · 판매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Q7. 재배지의 주소나 자택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도 됩니까?

A. 주소는 **실거주지의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락처**의 경우 농약 안전정보시스템의 정확한 구매 내역 열람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